

2019회계연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과천시장

2019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 4. 27. ~ 5. 16. (20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현석(과천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이 남주(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 정현(세무사)

과천시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검사의견서	1
<hr/>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hr/>	
1. 과천시 재정 현황	2
<hr/>	
2. 세입 · 세출 결산	3
<hr/>	
3. 기금의 결산	15
<hr/>	
4. 재무제표의 결산	16
<hr/>	
5. 성과보고서	18
<hr/>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9
<hr/>	
III.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1
<hr/>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40
<hr/>	

I. 감사의견서

과 천 시 장 귀 하

2020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로부터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과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과천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과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현 석



검사위원 이 남 주



검사위원 박 정 현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세 입 (수 입)	523,542	627,949	801,995
	세 출 (지 출)	207,970	226,101	378,560
	결 산 상 잉 여 금	315,572	401,848	423,434
일 반 회 계	세 입	326,264	355,316	401,510
	세 출	190,127	209,407	313,493
	결 산 상 잉 여 금	136,137	145,909	88,017
특 별 회 계	세 입	28,361	102,288	166,059
	세 출	15,537	14,096	62,524
	결 산 상 잉 여 금	12,824	88,192	103,534
기 금	세 입	168,917	170,345	234,426
	세 출	2,306	2,598	2,543
	결 산 상 잉 여 금	166,611	167,747	231,883

기금을 포함한 22개 전체 회계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과천시 재정 규모는 801,995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174,04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 규모’는 5,378천원, 지방세 실제 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1,340천원 임.

결산상 잉여금 423,434백만원은 일반회계 결산잉여금 88,017백만원,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103,534백만원, 기금의 결산잉여금 231,883백만원의 합계액 임.

일반회계의 결산잉여금 내역은 이월금 39,81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86백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44,819백만원 임.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553,574	567,568	376,017	191,551
일 반 회 계	381,727	401,509	313,492	88,017
특 별 회 계	171,847	166,058	62,524	103,534
공기업특별회계	166,913	158,681	58,908	99,773
상 수 도	15,040	16,287	7,478	8,809
하 수 도	14,497	14,788	6,325	8,462
지식정보타운	137,375	127,605	45,105	82,500
기타특별회계	4,934	7,376	3,616	3,760
저 소 득	467	503	1	502
의 료 보 호	413	414	375	39
도 시 주 차 장	4,052	6,458	3,238	3,219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 (D)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	21,281	3,458	17,909	3,387	145,514
일 반 회 계	-	19,478	2,423	17,909	3,386	44,819
특 별 회 계	-	1,802	1,035	-	1	100,694
공기업특별회계	-	1,802	1,035	-	-	96,935
상 수 도	-	856	267	-	-	7,685
하 수 도	-	946	760	-	-	6,756
지식정보타운	-	-	7	-	-	82,493
기타특별회계	-	-	-	-	1	3,759
저 소 득	-	-	-	-	-	501
의 료 보 호	-	-	-	-	1	37
도 시 주 차 장	-	-	-	-	-	3,219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67,5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53,574백만원보다 13,994백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92%인 376,01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91,551백만원 임.

이 중 명시이월액 21,281백만원, 사고이월액 3,458백만원 및 계속비이월액 17,909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3,38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514백만원 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381,727	411,377	401,509	81	9,786
결 산 확 인 액	381,727	411,377	401,509	81	9,786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은 401,50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5.18%로서 19,782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01,509,809,145	401,509,809,145	-

일반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0 1 9	381,727	411,377	401,509	81	9,786
2 0 1 8	340,096	365,617	355,317	1,788	8,512
증 감	41,631	45,760	46,192	△1,707	1,274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18년과 비슷한 97.6%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13% 증가(46,192백만원)로 401,509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불납결손액의 경우 전년도 1,788백만원보다 1,707백만원이 감소한 81백만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감소했음.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81,727	411,377	401,509	81	9,786
지 방 세	70,177	84,703	78,143	81	6,478
세 외 수 입	35,170	44,165	40,858	-	3,307
지 방 교 부 세	27,055	31,750	31,750	-	-
조정교부금등	56,860	58,341	58,341	-	-
보 조 금	46,554	46,506	46,506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부거래	145,909	145,909	145,909	-	-

과목별로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9.46%인 78,14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0.17%인 40,858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7.90%인 31,750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4.53%인 58,341백만원, 보조금은 11.58%인 46,50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337,966	381,727	313,492	39,811	28,424
결 산 확 인 액	337,966	381,727	313,492	39,811	28,424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예산액은 337,966백만원이며 전년도에서 43,761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381,727백만원 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12%인 313,492백만원임.

이월액은 39,811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49건 19,47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지방문화원육성지원’ 등 18건 2,423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시립요양원 건립’ 등 3건 17,909백만원 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44%인 28,424백만원이며, 주요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24,992백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3,430백만원 등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13,492,587,315	313,492,587,315	-

일반회계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와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용·전용 및 이체

예산의 이용은 해당 내역이 없으며,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총 99건으로 8,136백만원, 조직 내 부문별 세부사업 전용액은 총 11건, 42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지출

인건비 지출액은 42,000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지출액은 21,154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용은 128,290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65,722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48,434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3,191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39,811백만원으로, 이월사업비 39,811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3,38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4,819백만원으로 결산 됨.

순세계잉여금 44,819백만원은 세입초과금 19,782백만원과 집행잔액 25,036백만원의 합 임.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지출액	2019년				전년대비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9,407	381,727	313,492	100%	82.12%	104,085	149.70%
일반공공행정	36,804	96,399	89,627	28.59%	92.98%	52,823	243.53%
공공질서및안전	1,144	4,066	3,209	1.02%	78.92%	2,065	280.51%
교육	6,745	9,379	8,335	2.66%	88.87%	1,590	123.57%
문화및관광	13,020	20,600	15,847	5.05%	76.93%	2,827	121.71%
환경보호	13,957	16,563	14,283	4.56%	86.23%	326	102.34%
사회복지	54,024	80,122	64,347	20.53%	80.31%	10,323	119.11%
보건	3,735	7,188	5,196	1.66%	72.29%	1,461	139.12%
농림해양수산	3,845	5,717	4,338	1.38%	75.88%	493	112.82%
산업·중소기업	1,443	3,601	2,857	0.91%	79.34%	1,414	197.99%
수송및교통	20,079	48,127	34,544	11.02%	71.78%	14,465	172.04%
국토및지역개발	7,919	35,861	22,651	7.23%	63.16%	14,732	286.03%
예비비	-	2,844	-	-	-	-	-
기타	46,693	51,260	48,258	15.39%	94.14%	1,565	103.35%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중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89,627백만원 (28.59%), 사회복지 64,347백만원(20.53%)등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부문은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로 22,651백만원(286.03%)이고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로 14,283백만원(102.34%)임.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71,847	168,157	166,058	-	2,098
공기업특별회계	166,913	158,737	158,681	-	55
상 수 도	15,040	16,316	16,288	-	28
하 수 도	14,497	14,815	14,788	-	27
지식정보타운	137,375	127,605	127,605	-	-
기 타 특 별 회 계	4,934	9,420	7,377	-	2,043
저소득주민생활 안 정 자 금	467	636	504	-	132
의료급여기금	414	415	415	-	-
도 시 주 차 장	4,053	8,369	6,458	-	1,911
결 산 확 인 액	-	-	-	-	-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은 166,05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89백만원(96.63%)이 적게 수납되었음. 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익은 다소 늘었으나,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다소 줄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166,058,544,852	166,058,544,852	-
공기업특별회계	158,681,598,306	158,681,598,306	-
기타특별회계	7,376,946,546	7,376,946,546	-

특별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67,822	171,847	62,524	2,837	106,48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62,968	166,913	58,908	2,837	105,168
상 수 도	13,394	15,040	7,478	1,124	6,438
하 수 도	12,207	14,497	6,325	1,706	6,466
지 식 정 보 타 운	137,367	137,375	45,105	7	92,263
기 타 특 별 회 계	4,854	4,934	3,616	-	1,31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67	467	1	-	466
의 료 급 여 기 금	413	413	375	-	38
도 시 주 차 장	3,974	4,053	3,239	-	814

○ 세출결산 개요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71,847백만원이고 지출은 예산현액의 36.38%인 62,52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3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06,486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62,524,465,640	62,524,465,640	-
공기업특별회계	58,908,397,900	58,908,397,900	-
기타특별회계	3,616,067,740	3,616,067,740	-

특별회계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9,478	2,423	17,909
문화체육과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시설비	-	119	-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조성(균특)	시설비	341	-	-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조성(균특)	자산및물품취득비	39	-	-
문화체육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36	-	-
문화체육과	직장운동부지원	시설비	-	298	-
문화체육과	직장운동부지원	감리비	-	22	-
문화체육과	직장운동부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87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	54	-
문화체육과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특조)	시설비	1,448	-	-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40	-	-
회계과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	시설비	1,260	-	-
회계과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	감리비	40	-	-
회계과	청사 시설물 개선	시설비	70	-	-
열린민원과	지적측량 관리	사무관리비	21	-	-
열린민원과	지적측량 관리	시설비	4	-	-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	575	-	-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	3	-	-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전산개발비	18	-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민간위탁금	-	10	-
일자리경제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00	-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국비)	포상금	1	-	-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확충(국비)	민간위탁금	60	-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확충(국비)	시설비	180	-	-
사회복지과	시립요양원 건립(국비)	시설비	28	22	11,017
사회복지과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시설비	40	-	-
환경위생과	자연환경 보전대책(도비)	기타보상금	2	-	-
환경위생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도비)	시설비	190	-	-
환경위생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도비)	감리비	10	-	-
환경위생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14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지원	시설비	20	-	-
환경위생과	2019년 도로재비산면지 저감 사업(국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	-
환경위생과	폐기물시설운영	연구용역비	-	20	-
공원농림과	공원시설물 보강	시설비	6,691	-	-
공원농림과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특조대체)	시설비	500	-	-
공원농림과	과천시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시설비	1,480	-	-
공원농림과	과천시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감리비	20	-	-
공원농림과	생태길 조성	시설비	-	701	-
공원농림과	생태길 조성	감리비	-	18	-
안전총괄과	재난재해예방	연구용역비	-	63	-
안전총괄과	재난재해예방	시설비	-	115	-
안전총괄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	-	-
안전총괄과	쿨링포그 설치사업	시설비	300	-	-
안전총괄과	안전도시사업	사무관리비	-	3	-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76	-	2,066
도시정책과	경관 공공디자인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7	-	-
도시정책과	의료시설 유치	연구용역비	70	-	-
도시개발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설비	39	-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교통과	대중교통운영지원	연구용역비	199	-	-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시설비	391	39	-
교통과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도비)	시설비	220	-	-
교통과	주차장 확충	시설비	120	610	-
건설과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730	-	-
건설과	도로시설물 정비(특조)	시설비	-	210	-
건설과	노후 노면 정비	시설비	800	-	-
건설과	기반시설(도로) 정비	시설비	526	-	4,826
건설과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시설비	700	-	-
건설과	전기시설 관리	시설비	166	-	-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증진	사무관리비	-	9	-
보건행정과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	198	-	-
보건행정과	보건소 청사관리	감리비	14	-	-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769	-	-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감리비	29	-	-
정보과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원(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50	-	-
부림동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52	-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회 계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합 계			1,802	1,034	-
상수도사업	블록시스템(1,2,5블록) 구축공사	시설비	125	-	-
상수도사업	상수도 관망 본부운영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	131	-	-
상수도사업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	600	-	-
상수도사업	결산감사수수료	사무관리비	-	9	-
상수도사업	블록시스템(1,2,5블록) 구축공사	시설비	-	258	-
하수도사업	하수관망분석 및 CCTV 조사 용역	시설비	87	-	-
하수도사업	8단지~부림교 구간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시설비	212	-	-
하수도사업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87	-	-
하수도사업	문원동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특별교부세)	시설비	500	-	-
하수도사업	과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60	-	-
하수도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긴급구간1차)	시설비	-	353	-
하수도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긴급구간1차)(국비)	시설비	-	407	-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결산감사수수료	사무관리비	-	7	-

3. 기금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91,906	53,983	55,251	1,269	145,887
통합관리기금	75,841	10,154	11,429	1,275	85,996
재정안정화기금	-	35,300	35,300	-	35,300
과천축제육성기금	15,033	76	228	152	15,110
체육진흥기금	2,100	-12	31	43	2,088
일자리기금	-	10,000	10,000	-	10,000
공공부조기금	3,101	-26	51	77	3,075
사회복지기금	11,004	-1	167	169	11,002
양성평등기금	3,059	-23	56	79	3,036
교육발전기금	25,483	-115	403	518	25,36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140	7,163	7,163	-	14,303
식품진흥기금	12	-2	3	5	9
재난관리기금	2,415	1,190	1,303	114	3,6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698	73	73	-	5,770
옥외광고발전기금	124	101	214	113	225
지역발전기금	16,737	259	259	-	16,996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결산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 미포함

2019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과 일자리기금이 신규 추가되어 2019년 말 총 1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8개의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음.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들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5,88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3,983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신규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인해 당해연도 조성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함.

본년도 기금 사용액은 1,269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재무제표의 결산

2019회계연도 과천시의회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2,031,260	1,970,614	60,646	3.08
I. 유 동 자 산	431,598	394,919	36,679	9.29
II. 투 자 자 산	9,892	5,015	4,877	97.25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65,604	164,188	1,416	0.86
IV. 주 민 편 의 시 설	538,357	535,355	3,002	0.56
V. 사 회 기 반 시 설	880,834	864,771	16,063	1.86
VI 기타비유동자산	4,975	6,366	(1,391)	(21.85)
부 채	114,830	82,142	32,688	39.79
I. 유 동 부 채	105,030	74,260	30,770	41.44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9,800	7,882	1,918	24.33
순 자 산	1,916,430	1,888,472	27,958	1.48
I. 고 정 순 자 산	1,588,767	1,568,496	20,271	1.29
II. 특 정 순 자 산	147,164	94,517	52,647	55.70
III. 일 반 순 자 산	180,499	225,459	(44,960)	(19.94)

2019회계연도 말 과천시의 자산은 2조 312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9,706억원보다 606억원(3.08%)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19회계연도 말 과천시의 부채는 1,148억원으로 전년도의 821억원보다 326억원 (39.7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22,536	104,129	18,407	17.68
가. 사업총원가	214,005	159,583	54,422	34.10
나. 사업수익	91,468	55,454	36,014	64.94
II. 관리운영비	54,905	51,425	3,480	6.77
III. 비배분비용	8,536	13,688	(5,152)	(37.64)
IV. 비배분수익	20,141	13,812	6,329	45.8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5,837	155,430	10,407	6.70
VI. 일반수익	192,441	166,931	25,510	15.28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6,604)	(11,500)	(15,104)	131.34

과천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140억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914억원을 차감한 1,225억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시정지원’ (136억원),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88억원)과 ‘노인복지증진’ (85억원)임.

또한, 2019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36억원과 경비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8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51억원, 기타수익 4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9회계연도 과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266억원으로 전년도의 (-)115억원보다 151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수익 및 일반수익이 각각 34억원, 63억원 및 255억원이 증가하고, 비배분비용이 51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5. 성과보고서

과천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 전략목표(7개) - 정책사업목표(51개) - 지표수(8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실국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51	83	5	49	27
의회사무과	1	1	2	-	1	1
기획감사담당관	1	1	3	-	2	1
자치행정국	1	14	24	1	15	8
경제복지국	1	23	32	3	20	9
안전도시국	1	10	19	1	10	6
보건소	1	1	1	-	-	1
정보과학도서관	1	1	2	-	1	1
맑은물사업소	-	-	-	-	-	-
환경사업소	-	-	-	-	-	-
동사무소	-	-	-	-	-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057	956	2,292	3,721
일 반 회 계	4,749	925	2,215	3,459
특 별 회 계	308	31	77	26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상 수 도	-	-	-	-
하 수 도	-	-	-	-
지 식 정 보 타 운	-	-	-	-
기 타 특 별 회 계	308	31	77	262
저 소 득	308	31	77	262
의 료 보 호	-	-	-	-
도 시 주 차 장	-	-	-	-
기 금	-	-	-	-
통 합 관 리 기 금	-	-	-	-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	-	-
과 천 축 제 육 성 기 금	-	-	-	-
체 육 진 흥 기 금	-	-	-	-
일 자 리 기 금	-	-	-	-
공 공 부 조 기 금	-	-	-	-
사 회 복 지 기 금	-	-	-	-
양 성 평 등 기 금	-	-	-	-
교 육 발 전 기 금	-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육 외 광 고 발 전 기 금	-	-	-	-
지 역 발 전 기 금	-	-	-	-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2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459백만원, 특별회계 262백만원임.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262,864	55,768	3,245	1,315,387
행정 재산	소 계	1,257,575	55,689	2,998	1,310,266
	공 용 재 산	185,057	315	279	185,093
	공 공 용 재 산	1,032,917	55,374	2,719	1,085,572
	기 업 용 재 산	39,395	-	-	39,395
	보 존 재 산	206	-	-	206
일 반 재 산		5,289	79	247	5,121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52,523백만원이 증가한 1,315,387백만원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소하천정비공사) 토지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편입 등임.

(4) 물품

물품 결산액은 신규취득 1,887백만원과 매각폐기 1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07백만원 증가한 9,855백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확인됨.

Ⅲ.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 목 록 -

1.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집행잔액 과다 개선 권고
2. 집행률 부진사업 개선 권고
3. 기금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통한 사용률 제고
4.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 개선 필요성
5. 미수납액 회수 및 지속적 관리
6. 재정자금(세계잉여금) 관리
7. 순세계잉여금 관리(우수 사례)
8.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임의 변경 지양
9. 실질적인 지표 설정 권고
10. 성과보고서의 달성률 산정 개선 권고
11. 정책사업목표 지표 확대에 단위사업별 지표 작성 보완

1.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집행잔액 과다 개선 권고

□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액(A)	지출액(B) (집행율)	잔액(A-B)	
				다음연도 사고이월(C)	집행잔액 (E=B-C)
공원 농림과	산림 및 조림관리 - 생태길 조성	1,300,000 (전년도 이월)	436,511 (33%)	720,892	142,597
	공원시설물 보강 - 광창 어린이공원 조성 외 3건	7,673,200	981,337 (13%)	6,691,863	0

□ 문 제 점

-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을 이월한 것을 다시 이월로 2020년 집행예정
- 산림 생태길조성의 경우, 1억4천2백만원 집행잔액

□ 개선권고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동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요구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월사업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산림 생태길 조성의 경우, 집행잔액을 1억4천2백만원의 발생원인은 낙찰차액(103,552천원)이 반영된 것임. 지나치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판단됨. 사업부서에서는 건전재정운영과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기 이월사업에 대해 신속 집행하도록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 집행율 부진사업 개선 권고

□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명	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집행율)	잔액(A-B)	
				집행잔액 (C=A-B)	다음연도 이월금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비)	765,071	242,805 (32%)	522,266	없음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60,000	26,328 (43%)	33,328	없음

□ 문 제 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비용이 집행율이 저조함

□ 개선권고

- 건강증진과 가족복지를 위한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잘 집행했는지 눈여겨보는 사업 예산임. 과천시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시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치매사업이 늦춰지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권고함
-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술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바라며 또한,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데 과천시는 주거비용으로 많은 시이므로 시에서는 정부에 조건의 범위를 넓혀주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를 권고함

3. 기금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통한 사용률 제고

□ 현 황

○ 기금예치시 이자율 변경 현황(표1)

구 분	2017. 1월	2018. 1월	2019. 3월	2019. 12월	2020. 3월
이자율	1.27%	1.52%	1.77%	1.27%	0.97%

○ 기금 조성 총괄 현황(표2)

(단위:천원)

구 분	2018년도말 조성액 ㉔	2019 당해 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조성액 (㉔+㉕)
		계㉕=(a)-(b)	조성액 (a)	사용액 (b)	
합 계	167,746,687	64,136,171	66,679,829	2,543,657	231,882,859
통합관리기금	75,841,442	10,154,293	11,429,262	1,274,968	85,995,736
재정안정화기금	0	35,300,000	35,300,000	0	35,300,000
과천축제육성기금	15,033,407	76,241	228,348	152,107	15,109,649
체육진흥기금	2,099,923	△11,936	31,369	43,305	2,087,987
일자리기금	0	10,000,000	10,000,000	0	10,000,000
공공부조기금	3,101,253	△26,083	50,526	76,610	3,075,170
사회복지기금	11,003,766	△1,332	167,339	168,672	11,002,433
양성평등기금	3,058,544	△22,690	55,960	78,651	3,035,853
교육발전기금	25,483,167	△115,084	402,722	517,806	25,368,08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139,623	7,162,986	7,162,986	0	14,302,610
식품진흥기금	11,553	△2,255	2,524	4,780	9,298
재난관리기금	2,414,970	1,189,898	1,303,428	113,529	3,604,8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697,795	72,564	72,564	0	5,770,359
육외광고발전기금	124,190	100,882	214,108	113,225	225,072
지역발전기금	16,737,048	258,687	258,687	0	16,995,736

○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과 사용내역 현황(표3)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기금조성내역 (a~e합계)	3,106,183	2,682,226	65,404,861	당해연도조성액 -통합관리기금사용액
(a)이자수익	1,011,450	1,271,116	1,285,480	
(b)기타수입	0	7,650	7,052,009	
(c)전입금	1,637,520	1,054,464	46,806,884	
(d)보조금	318,430	14,040	1,800	
(e)예수금	138,783	334,957	10,258,688	
사용가능재원	1,329,880	1,292,806	1,297,305	
기금사용액	1,378,792	1,545,266	1,268,689	당해연도사용액 - 통합관리기금사용액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의 경우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기금의 경우 사용실적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조성된 기금의 규모에 비하여 기금의 사용액이 저조한 사유는 각 기금별 이자수익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초저금리현상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당초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기금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예산이 편성 되었음에도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기금예치시 이자율이 하락하여(예치이자율 전년 대비 45% 감소)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향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별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간 조성금액을 재조정하거나, 원금도 일부 사용할 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4.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 개선 필요성

□ 지방세 미수납액 및 지방세수입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 방 세			지방세수입	차이(*)	
	보통세	지난년도수입	계			
2018	징수결정액(a)	73,611,318	832,125	74,443,443	67,712,345	5,898,973
	수납총액(b)	73,052,587	1,786,413	74,839,000		
	환급액(c)	841,295	6,215,539	7,056,834		
	실제수납액 (d=b-c)	72,211,292	(4,429,126)	67,782,166		
	불납결손액(e)	-	1,765,278	1,765,278		
	미수납액 (f=a-d-e)	1,400,026	3,495,973	* 4,895,999		
2019	징수결정액(a)	81,716,346	* 2,987,178	84,703,524	79,807,525	1,908,820
	수납총액(b)	83,654,645	1,259,716	84,914,362		차이 : '18 미 수납액 - '19년징수결정액중 지난 년도 수입
	환급액(c)	4,704,915	2,066,300	6,771,215		
	실제수납액 (d=b-c)	78,949,731	(806,584)	78,143,147		
	불납결손액(e)	697	80,781	81,478		
	미수납액 (f=a-d-e)	2,765,918	3,712,981	6,478,899		

○ 지방세 미수납액 및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지방세 미수납액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
2018년말	4,895,999	15.6	762,293
2019년말	6,478,899	12.1	782,753

<적용지침 발췌>

* 대손충당금 : 과거 결손처분 경험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표시한 것

* 대손충당금 = (결손추정율 x 미수채권잔액(다음연도이월액)) - 결산보정전 대손충당금 잔액

* 결손추정율 = (과거3년간 체납채권의 결손처분액 / 과거3년간 체납채권액) x 100

□ 문제점

- 상기 내역에서와 같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동 미수납액을 재정상태표상 미수세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액의 경우 환급액이 발생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동 금액만큼 재정상태표상 미수세금과 일반순자산이 과대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부상 미수납액과 실제 미수세금과의 차이는 차년도에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표상 지방세수입으로 반영하고 있음
- 미수세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거 결손처분 경험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과대계상된 미수세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계상되지 않고 있음

□ 개선권고

- 결산 시 행정안전부 규정과 결산 서식을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결산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의 방법에 대해 결산 정책 개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 할 것을 권고함
 - (1안) 장부상 미수납액과 실제미수납액과의 차이를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여 당기 미수세금과 지방세수입에 반영하는 방법
 - (2안) 장부상 미수납액과 실제미수납액과의 차이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고, 실제미수납액은 과거 결손처분 경험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5. 미수납액 회수 및 지속적 관리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현황

(단위:천원)

년도	사 유 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소계		
2018	무재산	1,115,988	1,458,061	2,574,049	138,796	2,712,845
	행방불명	65,636	-	65,636	-	65,636
	납세태만	1,094,422	1,796,895	2,891,317	1,934,289	4,825,606
	폐업 또는 부도	331,482	321,197	652,680	-	652,680
	소송계류	129,351	34,238	163,589	-	163,589
	자금압박	393,842	-	393,842	-	393,842
	기 타	1,765,278	5,874	1,771,152	-	1,771,152
	합 계	4,895,999	3,616,265	8,512,264	2,073,085	10,585,349
2019	무재산	32,379	238,419	270,798	132,306	403,104
	행방불명	488,153	-	488,153	-	488,153
	납세태만	1,721,406	3,060,061	4,781,467	1,910,771	6,692,238
	폐업 또는 부도	2,024,036	-	2,024,036	-	2,024,036
	국외이주	33,617	-	33,617	-	33,617
	자금압박	1,809,449	-	1,809,449	-	1,809,449
	기 타	369,858	8,785	378,643	-	378,643
	합 계	6,478,899	3,307,265	9,786,164	2,043,077	11,829,241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무재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 납세태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임

- 세수증가(2018년 대비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 19.8%) 및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미수납액이 전기대비 1,244백만원 증가(증가율 : 11.8%)하였음. 미수납액의 사유별 구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기대비 무재산 및 기타(원인미규명분으로 추정됨) 항목이 감소하고,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과천시 체납 관리단의 체납 원인규명의 효과로 그동안 행정력이 약했던 체납채권 관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문 제 점

- 사유별 구성내역 중 미수납액의 증가는 대부분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유별 구성내역 중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국외이주로 인한 미수납액의 경우 불납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개선권고

- 향후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악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수납액의 회수 및 관리강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관련하여 과거 3년간 평균 결손 경험율을 기준으로 결손추정율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별 구성내역 중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및 부도, 국외이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요함

6. 재정자금(세계잉여금) 관리

□ 회계별 재정자금 현황

(단위:천원)

구분	내역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재정자금	136,137,522	145,909,239	88,017,222
	이월금	30,809,272	46,649,035	43,197,685
	순세계잉여금	105,328,250	99,260,204	44,819,537
특별회계(*)	재정자금	12,823,759	88,192,141	103,534,079
	이월금	929,704	4,025,410	2,839,421
	순세계잉여금	11,894,055	84,166,731	100,694,658
기금	재정자금	91,104,941	91,905,245	145,782,729
	이월금	247,430	12,600	-
	순세계잉여금	90,857,511	91,892,645	145,782,729
합계	재정자금	240,066,222	326,006,625	337,334,030
	이월금	31,986,406	50,687,045	46,037,106
	순세계잉여금	208,079,816	275,319,580	291,296,924

(*)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합계액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차이
2018년	합계	340,095,552	365,526,836	25,431,284
	지방세수입	66,623,000	74,443,444	7,820,444
	세외수입	24,303,193	34,506,870	10,203,677
	지방교부세	26,945,000	30,217,748	3,272,748
	조정교부금	51,287,000	54,312,711	3,025,711
	보조금	34,793,616	35,902,320	1,108,7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143,743	136,143,7443	0
2019년	합계	381,727,054	411,377,452	29,650,398
	지방세수입	70,177,000	84,703,524	14,526,524
	세외수입	35,170,903	44,165,818	8,994,915
	지방교부세	27,055,000	31,750,204	4,695,204
	조정교부금등	56,860,000	58,341,692	1,481,692
	보조금	46,554,913	46,506,975	(47,93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5,909,238	145,909,238	0

-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금액 297억 발생

□ 문제점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일치시키는 균형예산의 대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며, 이는 곧 시민에 대한 편익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이월금 분석결과 매년 상당금액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함

□ 개선권고

- 세입예산을 세출예산과 연계시키지 않고 세입의 증감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감소시킬 것을 권고함
- 과거 세계잉여금의 분석결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총 세계잉여금은 증가추세에 있음.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과 통상적인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연도말 세계잉여금의 변동 내역을 추정하고, 중장기적 회계별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자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참고로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회기금 및 일자리기금으로 재정자금을 재배분하여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감소시켰음)
- 보조금의 사용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7. 순세계잉여금 관리(우수 사례)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세입액	세출액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금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
2019년	381,727	401,509	313,492	88,017	44,819	11.7%
2018년	340,095	355,316	209,407	145,909	99,260	29.1%
2017년	313,334	326,264	190,126	136,137	105,328	33.6%

-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신속집행을 통한 집행율 제고를 통하여 순세계 잉여금은 44,819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함

○ 전년도 권고사항(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개선 우수 사례

○ 2019년 권고사항에서 알수 있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 2019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시킨 것은 예산 총계주의와 재정균형을 실현하는 것으로 우수 사례하고 하겠음

8.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임의 변경 지양

□ 현 황

부서명	성과지표명 (연도)	2019 성과계획서 달성률(%)		2019 성과보고서 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보건행정과	감염병퇴치를 위한 폐렴예방 접종율 향상(2018)	77.5	25	산정 불가	산정 불가

□ 문 제 점

- 2019년 성과계획서에서 측정산식을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만65세 인구수)*100로 기재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서는 측정산식을 폐렴구균예방접종 전산등록자수로만 기재하였고 목표 및 실적도 기존 퍼센티지 방식에서 건 방식으로 임의 변경

□ 개선권고

-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목표 미달성 시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산정불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측정산식으로 재확인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것을 권고함

9. 실질적인 지표 설정 권고

□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명 성과지표	작성 현황	검토사항
공원농림과 고사목발생 감소율	○ 산식 : (전년도 고사목수 - 금년도 고사목수) / 금년도 고사목수 × 100 ○ '19년 : 달성 목표 5 / 실적 0 / 달성율 100%	○ 고사목 현황 : 전년도 고사목 '0그루', 금년도 고사목 '0그루' ○ '18년, ' 19년 측정산식 동일
환경위생과 생태교란식물 시민 참여 증가율	○ 산식 : (전년도 참여자수 - 금년도 참여자수) / 금년도 참여자수] × 100 ○ '19년 : 달성 목표 15 / 실적 -17.5 / 달성율 0%	○ 참여자 현황 : 참여인원 400명, 2018년 330명 ○ '18년, ' 19년 측정산식 동일

□ 문제점

- 고사목이 없으므로 목표를 고사목 감소율로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성과의 달성도 파악이 어려움
- 생태교란식물 시민 참여 증가율은 [금년도-전년도]로 작성해야 함에도 오류 산식을 개선없이 2년이상 적용함

□ 개선권고

- 성과보고서 총괄부서(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지표에 대한 재검토로 부적정한 오류 산식을 해당부서에 변경을 권고하시기 바람

10. 성과보고서의 달성률 산정 개선 권고

□ 현 황 (달성률 정정이 필요한 사례)

부서명	성과지표명 (연도)	2019 성과계획서		2019 성과보고서		비고
		달성률(%)		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의회사무과	의정활동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2018)	77	7	7	7	오기재
기획감사 담당관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종합평가 순위(2018)	8	-	8	10	2018년도 실적 미기재
	청렴도평가점수(2018)	7.88	7.97	7.88	8.07	오기재
	불합리규제 감축률(2018)	25	20	25	24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동률 (2018)	30	33	34	32	"
문화체육과	관람객참여율 (2019)	5	-	5	100	18년도 목표치 90% 에서 19년도 부터는 5%로 바뀐 것이 단순 오기재 인지, 측정산식 변경인지 확인불가
	관광콘텐츠 개발건수(2018)	1	3	1	1	오기재
	체육대회 개최건수(2018)	40	43	40	37	"
	교육수강생 증가율(2018)	5	5	5	16	"
회계과	회계교육 횟수(2018)	2	-	2	6	2018년도 실적 미기재
	분개직접 검토율(2018)	80	-	80	93	"
	계약과정 공개율(2018)	94	-	94	100	"
	시청사 LED조명 교체율(2018)	96	-	0	0	오기재
	저공해차량 보유율(2018)	35	-	35	40	2018년도 실적 미기재

부서명	성과지표명 (연도)	2019 성과계획서 달성률(%)		2019 성과보고서 달성률(%)		비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세무과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수 증대(2018)	96	97.1	96	98.5	오기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2018)	40	40.75	45	48.3	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2018)	25	11.7	25	12.7	ㄴ
열린민원과	민원행정 만족도(2018)	84	85	84	89	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용율(2018)	25	17	25	19	ㄴ
정보통신과	교육참여율(2018)	95	95	95	73	ㄴ
	교육참여율(2019)	95	95	95	89	ㄴ
일자리 경제과	공공일자리 참여율(2018)	64	100	182	192	ㄴ
	공공일자리 참여율(2019)	69	-	208	268	ㄴ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컨설팅 운영건수(2018)	20	8	20	21	ㄴ
복지정책과	급여적정 지급률(2018)	80	92	80	86	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 금융자건수(2018)	100	133	5	5	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 금융자건수(2019)	100	-	3	0	ㄴ
사회복지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2018)	21	-	21	67	미기재
	노인복지관 유료화 추진(2018)	30	30	35	60.7	오기재
	화장율(2018)	65	65	65	57.9	ㄴ

부서명	성과지표명 (연도)	2019 성과계획서 달성률(%)		2019 성과보고서 달성률(%)		비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교육 청소년과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2018)	67	68	67	87	ㄴ
	자원 동아리 만족도(2018)	75	75	76	97	ㄴ
	진로체험 참여자 만족도(2018)	75	92.5	80	85.2	ㄴ
	교육문화강좌 및 체육관 프로그램 청소년 수강생 증가율(2018)	5	0.12	5	-8	ㄴ
	교육문화강좌 및 체육관 프로그램 청소년 수강생 증가율(2019)	5	-3.8	5	1.1	ㄴ
	특화프로그램 사업별 만족도(2018)	92	92	92	93.2	ㄴ
	특화프로그램 사업별 만족도(2019)	92	92	92	93.4	ㄴ
환경위생과	주민만족도 평가	24.52	진행중	25.2	24.65	오기재 및 2019년 성과계획 작성 시점 까지 실적측정 미완료
공원농림과	우량종자 지원 증가율(2018)	10	5	10	10	오기재
안전총괄과	지역안전도 향상(2018)	6	-	6	1	2019년 성과계획 작성 시점까지 실적측정 미완료
	안전인식 향상도(2018)	4	-	4	4.14	ㄴ
	민방위교육 만족도(2018)	84	-	84	85	ㄴ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원안통과율(2018)	90	83	90	50	오기재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고시건수	15	3	15	49	ㄴ
도시정비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2018)	50	50	50	55.8	오기재
	민원처리매우불만족률 감소(2018)	8	1	8	7.645	오기재

부서명	성과지표명 (연도)	2019 성과계획서 달성률(%)		2019 성과보고서 달성률(%)		비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율(2018)	0	0	
교통과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징수율(2018)	62	76.5	62	77.3	ㄱ
건설과	고효율조명 교체율(2018)	36	36	32	32	ㄱ
건축과	일반주거 및상업지역 불법건축행위감소율 (2018)	20	35	15	-55	오기재 및 성과계획서에 측정산식 미기재
	개발제한구역 불만민원감소율 (2018)	15	15	15	20	오기재
정보과학 도서관	이용자만족도 (2018)	80	80	80	87	오기재
	이용자증가율 (2018)	2	2	2	1.2	ㄱ

□ 문제점

- 2019년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 오기재, 미기재 및 기타 정정사안 등 총 53건의 오류가 확인됨

□ 개선권고

- 성과보고서 작성 시 동년도 성과계획과 차기년도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교차검증하여 기본적인 오기재 및 미기재 발생수치를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정책사업목표 지표 확대로 단위사업별 지표 작성 보완

□ 현 황

지역 (기준년도)	정책사업목표		기준년도 기준 총괄인력(명)	예산액(백만원)
	개수	지표수		
과천시 (2019)	48	83	509	238,666
과천시 (2020)	49	88	545	274,343
의왕시 (2019)	74	197	618	364,090
군포시 (2017)	63	141	807	506,037
안양시 (2019)	136	338	1,867	1,218,417
양평군 (2019)	74	148	866	573,434
가평군 (2018)	66	149	668	447,217

□ 문 제 점

- 타 시군대비 과천시의 정책사업목표의 지표수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정책목표달성의 난이도가 낮아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대표성이 미흡한 점이 확인되기에 시정이 필요함

□ 개선권고

- 각 부서의 단위사업별로 최소 1개씩의 성과지표를 작성할 것을 권고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p>시정 및 건의사항</p>	<p>1.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p> <p>정보통신과 세부사업 『전산장비관리』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은 총 477,006천원이며 이 중 425,726천원은 『2018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으로 통합발주되었으며, 최종 348,411천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p> <p>예산서를 보면 각각 별도로 부기명과 금액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이를 통합발주 하고 있어 예산서 내용과 금액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통합 발주할 사항은 예산편성 시 하나의 사업(부기)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p>
<p>조치결과</p>	<p>○ 2020년 예산편성시 하나의 부기명(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으로 통합표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p>
<p>관련부서 (담당팀)</p>	<p>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p>
<p>시정 및 건의사항</p>	<p>2. 규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사용 권고</p> <p>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클린카드 사용 업종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인수위 활동 관련 간담회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나눔가게 기부 릴레이 업무협약식 관련 관계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관련 규정에 맞는 집행을 권고합니다.</p>
<p>조치결과</p>	<p>○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관련부서 (담당팀)</p>	<p>회계과(경리팀)</p>

<p>시정 및 건의사항</p>	<p>3. 미수납액의 체계적인 관리</p> <p>세입 전체내역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회계는 대부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도시주차장특별회계이며 매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체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4,896백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3,616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934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과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p> <p>미수납액 관리의 특성상 당해연도 발생액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진행되나 지난연도 이월액은 연도별로 회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회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19년 체납관리TF팀 발족으로 해당 금액이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도시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폐차 시에만 회수될 가능성이 크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 관리부서(세무과, 교통과)의 체계적인 관리(채권연령분석을 통한 관리 등) 및 불납결손액 활용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p>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및 전화납부독려, 담당 공무원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이 2018년도 징수액(316백만원)의 2.2배인 690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2020년 2월에 소멸시효(5년) 대상 340건에 대하여 404백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 전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이 장기고질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및 결손처분을 통해 2018년 결산기준 지방세 미수납액 4,896백만원 중 1,340백만원(27.4%)을 정리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은 174백만원을 징수하여 2018년도 징수액 212백만원 대비 3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체납관리 TF팀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중이며, 협의가 종결될 때까지 2020년도부터 체납관리단 1명을 교통과에 배치하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관련부서 (담당팀)</p>	<p>세무과 (징수팀, 체납관리TF팀), 교통과(주차지도팀)</p>

시정 및
건의사항

4. 실질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건

○ 부서 성과지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제시

건설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매년 100%이며, 이는 先 목표, 後 실적이 아닌, 실적이 목표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하여 달성율이 10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실적으로 나와야 할 성과지표 설정의 근거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타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의 달성목표가 명확히 표시되어 이에 대한 달성도 또한 0% ~ 300%까지 다양하게 나왔으나 건설과의 경우에는 실적에 관계없이 항상 100%가 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팀에서도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각 부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부서 성과지표의 통일성 있는 측정산식 권고

산업경제과의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지표	측 정 산 식
고사목발생 감소율	$(\text{전년도 고사목수} - \text{금년도 고사목수}) / \text{금년도 고사목수} * 100$
우량종자지원 증가율	$(\text{금년도 종자지원량} - \text{전년도 종자지원량}) / \text{금년도 종자지원량} * 100$
가축방역예방 증가율	$(\text{금년도 가축질병 발생량} - \text{전년도 가축질병 발생량}) / \text{금년도 가축질병 발생량} * 100$
창업상담지원 증가율	$(\text{금년도 창업상담지원수} - \text{전년도 창업상담지원수}) / \text{전년도 창업상담지원수} * 100$
보조금 지급율	$(\text{금년도 보조금 지급건수} - \text{전년도 보조금 지급건수}) / \text{금년도 보조금 지급건수} * 100$
병충해 및 시설물관련 민원발생 감소율	$(\text{전년도 민원발생건수} - \text{금년도 민원발생건수}) / \text{금년도 민원발생건수} * 100$

산업경제과의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을 보면, 어떤 지표에는 분모를 금년도 해당 사업량을, 또 다른 지표에는 전년도 해당 사업량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실적과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통일성도 없으며 계산 값 또한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감소율이나 증가율로 나타내고 있는데 분모의 값은 전년도 또는 금년도 중 하나의 값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수학적으로 정확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금년도 값이 아닌 전년도 값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p>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의 실질적인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 성과지표정의서를 정부합동 평가지표와 연동하는 등 년 초에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 공원농림과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중 증가율 혹은 감소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분모를 금년도 값에서 전년도 값으로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매년 일정하게 하여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2019년, 2020년 창업상담지원 증가율의 분모를 금년도 값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산팀)
<p>관련부서 (담당팀)</p>	<p>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농림과, 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p>

<p>시정 및 건의사항</p>	<p>5. 예산편성된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미집행</p> <p>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뉘는 등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p> <p>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p> <p>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과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담금, 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예산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634,24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기금 소관부서 책임하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미집행되어 634,243천원 전액이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p> <p>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지출하지 않아 전출금 예산 전액이 미집행됨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p>
<p>조치결과</p>	<p>○ 기금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업무 미숙으로 기금예산이 미집행되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집행되었던 기금 634,243천원을 재편성하여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p>
<p>관련부서 (담당팀)</p>	<p>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p>

<p>시정 및 건의사항</p>	<p>6.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국비)』의 집행잔액 ‘-’ 발생</p> <p>『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국비)』 사업 예산액은 3,981천원, 보조금 수령액은 3,892천원, 집행액은 3,981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89천원으로 결산이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보다 보조금 수령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p> <p>국·도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편성된 예산뿐 아니라 보조금 수령액도 확인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수령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량을 조정하거나 시비로 국·도비의 부족분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p> <p>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국·도비 수령액에 따라 집행잔액이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조치결과</p>	<p>○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는 지원 대상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예산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집행하였으나, 이후 내시서 재변경(예산 감경)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 집행 전 보조금 수령액 확인 후 집행하며, 부족 시 시비로 국·도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p>
<p>관련부서 (담당팀)</p>	<p>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p>

7.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과천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대 비율
2018	442,001	234,101	47,784	2,890	183,427	41.5%
2017	340,134	148,961	30,693	1,063	117,205	34.5%
2016	301,334	77,755	19,037	1,340	57,378	19.0%

시정 및
건의사항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6,222백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 비율은 41.5%로써 직전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현액 대 비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치결과

○ 2019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신속 집행을 통한 집행율 제고를 통하여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4,8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담당팀)

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

<p>시정 및 건의사항</p>	<p>8.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 반영</p> <p>2018회계연도의 이월사업비는 47,784백만원으로 직전년도 30,693백만원에 비해 17,091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예산현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p> <p>특히 사회복지과의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433백만원,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운영』 704백만 원과 문화체육과의 직장운동부 및 학교운동부 건립사업 등 2,445백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 충분한 사전검토,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p> <p>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같은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요구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월사업 요청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조치결과</p>	<p>○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은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고, 또한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도 공간 확보 지연으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p> <p>○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운동부 건립사업 예산은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의 총예산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경기도 계약심사 등) 진행에 많은 기간에 소요되어 건축공사를 당해연도에 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설계비, 건축비 등을 필요 해당연도에 맞춰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육팀)</p> <p>○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예산현액사업 (이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결과, 2019 회계연도의 이월 사업비는 총 39,811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7,784백만원에 비해 4,0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집행점검 및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p>
<p>관련부서 (담당팀)</p>	<p>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 문화체육과(체육팀), 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p>

<p>시정 및 건의사항</p>	<p>9. 보조금 정산 및 관리 철저</p> <p>시에서는 생활체육 육성·프로그램 운영, 각종 대회 참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의 사업을 시 체육회를 통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p> <p>그런데 시 체육회에서는 시장기배 대회 중 일부 개최하지 못해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기타 산하협회에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내용 또는 소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p> <p>보조금 정산 서류를 보면, 탁구 대회는 집행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누락, 골프 대회는 자부담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상배(賞杯)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지출의 경우 영수증 또는 현금집행 확인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진행 업체와의 계약도 비교적 없이 진행되었습니다.</p> <p>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 시 회계처리 요령을 준수하시고 기준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p>
<p>조치결과</p>	<p>○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감모델을 적용하여 시에서 총액을 편성하고 이를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배분 결정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연초에 배분 결정된 종목별(16개 종목) 대회 예산 중 미개최 종목(2개 종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2018. 8월 중 14개 종목 사용계획으로 보조금 85백만원을 교부신청하였으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을 14개 종목에서 총 84,124,220원을 집행하였기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 사용한 사례는 아닙니다.</p> <p>그 외 사항 중 시 보조금 교부조건, 회계처리 요령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부단체(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를 통하여 가맹단체에 보조금 재교부·사용·정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이 적정 집행되도록 재차 통보하였고, 시에서도 최종정산 시 영수증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회계처리 요령을 준수하였습니다.</p>
<p>관련부서 (담당팀)</p>	<p>문화체육과(체육팀)</p>

<p>시정 및 건의사항</p>	<p>10. 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체) 시 검토 철저</p> <p>예산의 변경사용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써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정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이체 등 예산변경 건수를 보면 총 42건(전용 38건, 이체 4건)으로 전년 대비 33건이 증가하였습니다.</p> <p>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변경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변경 사용의 큰 폭의 증가는 당초 의회 예산심의의 의미를 훼손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변경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p>
<p>조치결과</p>	<p>○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 운영하고,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변경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2019회계연도 예산변경 사용은 전용 11건으로, 조직개편 (2019.7.17.일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 간의 예산 이체 64건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산 심의의 의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변경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p>
<p>관련부서 (담당팀)</p>	<p>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p>